

#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0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03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.

## 1. 제안이유

미탄면 주민투표관련 행정·재정상 필요한 조치로 주민지원(가구별 지원)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,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지원범위 확대 규정 신설(안제6조의2제3항)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별표 3의 사업 중 가구별 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과 농업용 자재
- 나. 주민감시 요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16조제3항)
-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적용
- 다. 기타 용어의 통일,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
-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'19년 당초 예산에 43,200천원 반영, 1회추경 8,640천원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 2019. 02. 15. ~ 2019. 03. 0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 요인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권고⇒반영계획서(미반영) 제출
- 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##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**아니한**”을 “**않은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**국립·공립연구기관**”을 “**국립·공립연구기관**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각호**”를 “**각 호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수립하고 제2항 각호**”를 “**세우고 제2항 각 호**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3. 영 제27조 별표3의 사업 중 **가구별 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과 농업용 자재**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**”를 “**각 호의 서류를 붙여**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**얻어야**”를 “**받아야**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**”를 “**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**”로 한다.

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**”를 “**각 호**

에 해당하는 자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잔여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,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. 운영)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(이하 “지원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주변영향지역(주변영향지역이 결정·고시되지 <u>아니한</u>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,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)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2명</p> <p>3.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(전문대학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<u>국·공립연구기관</u>의 선임연구원 이상) 2명</p> <p>4. 삭제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주민지원기금 조성) ① (생략)</p>	<p>제4조(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. 운영) ①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않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국립·공립연구기관</u>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주민지원기금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지급한다.

제6조의2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

① (생략)

② 군수가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3. (생략)

제7조(사업계획서의 제출) 지원협의체에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----- 각 호-----  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----- 세우고  
제2항 각 호-----  
-----  
-----.

제6조의2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영 제27조 별표3의 사업 중 가구별 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과 농업용 자재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제7조(사업계획서의 제출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각 호의 서류를 붙여  
-----  
-.

1. ~ 3. (생략)

제8조(사업계획서의 변경등)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9조(기금의 운용. 관리) ①·② (생략)

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0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 ~ ③ (생략)

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·2. (생략)

⑤당연임명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심의회 기능) ①심의회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업계획서의 변경등) ----  
-----  
----- 받아야 ----.

제9조(기금의 운용. 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  
-----  
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----  
-----  
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-----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----  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⑤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남은 기간 ----  
-----.

제11조(심의회 기능) ①-----

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 
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2조(간사 및 수당등) ① (생략)

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의하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지역주민의 감시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-----  
각 호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간사 및 수당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위원 중 -----  
----- 대해서-----  
-----  
-----.

제16조(지역주민의 감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입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】

제25조(지역주민의 감시)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(이하 "주민감시요원"이라 한다)에게 폐기물의 반입·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
1.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: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

2.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: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

### 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】

제27조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,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.

### 【 지방자치법 】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【 주민투표법 】

제24조(주민투표결과의 확정)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·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비용추계서(제3조제1항 관련)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비용발생 요인 : 폐기물처리시설축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(폐측법) 제25조제2항에 따라 매립장 감시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
- 나. 관련 조문 :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(안) 제16조3항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.

#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2019년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변경(7,530원→8,350원)
- 현재 매립장 감시원 수당(1,200,000원/월)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금년도 최저임금이 변경 됨에 따라 최저임금액으로 변경 지급

#### 나. 추계 결과(2021년 12월31일 매립장 사용 종료)

구분	합계	2019년도	2020년도	2021년도
매립장 감시원수당	163,425,600	51,840,000	54,432,000	57,153,600
산출내역		1,440,000원*12*3	1,512,000원*12*3	1,587,600원*12*3

#### 다. 재원조달 방안

- 가. 자체재원조달 :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(세외수입)

#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
연락처	(033) 330 -2340

**< 연도별 비용추계표 >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 年)	5차년도 (20 年)	계
<b>세 입</b>							
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		62,800	64,684	66,624			194,108
<b>세 출</b>							
매립장 감시원 수당		51,840	54,432	57,154			163,426
<b>재원 조달</b>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62,800	64,684	66,624			194,108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62,800	64,684	66,624			194,108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